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16. 10. 31.>

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(제15조제4항제2호 관련)

구분		평정점
자격증 (0.5)	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통신·전자·교통·환경·건축·토목·항공·조선·화공·위험물·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및 기능장, 청소년 상담사 1급, 상담심리사 1급, 화약류 관리기술사	0.5
	경비지도사, 통신·전자·교통·환경·건축·토목·항공 ·조선·화공·위험물·정보처리 분야의 기사, 청소년 상 담사 2급, 상담심리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, 청소년 지도사 1급, 화약류 관리기사, 도로교통사고 감정사, 컴퓨터활용능 럭 1급, 수화통역사, 점역교정사 1급	0.3
	법무사, 행정사, 공인중개사, 통신·전자·교통·환경·건축·토목·항공·조선·화공·위험물·정보처리 분야의산업기사, 청소년 상담사 3급, 임상심리사 2급, 청소년 지도사 2급,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점역교정사 2급 및 3급	0.2
	박사	0.5
학위 (0.5)	석사	0.3
	학사	0.2

※ 비고

- 1. 자격증 가산점과 학위 가산점을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고, 해당 계급(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)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.
- 2.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16조에 따른 채용 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이 면제되거나 응시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없다.
- 3.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있다.